

---

# 지방문화원 지원 ·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(22~26)

---

2021. 12. 22.



문화체육관광부

# ☐☐ 목 차 ☐☐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현황분석 .....	2
III. 비전 및 추진전략 .....	6
IV. 중점 추진 과제 .....	7
V. 향후 계획 .....	13
VI. 추진 일정 .....	14

# I. 추진 배경

## □ 문화분권 · 일상적 문화향유 강조 속, 지방문화원 위상 변화

- '문화비전 2030'(2018.5), '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'(2020.2) 등 지역의 문화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 계속

- (문화비전 2030) 의제6. 지역 문화분권 실현
- (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) △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, △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조성, △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·활용, △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

- 정책 초점이 '일상 속 문화 향유'로 옮겨감에 따라, 지역 공동체에 기반하여 고유문화 보존을 중점 담당해 온 지방문화원 역할 상대적 감소

- \* 1947년 강화문화원을 시작으로, 2021년 11월 현재 231개의 지방문화원 설립
- \*\* 지역문화재단,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민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문화기관 증가

## □ 지방소멸, 고유문화 소실 위기에서 지방문화원 역할 지속 요구

-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감소('20년) 및 수도권 인구 50% 초과('19년) 등 지역인구 불균형 심화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 확산

- \* '20년 인구 전년 대비 2만명 감소, 수도권 거주 인구 전체의 50.2%(주민등록인구통계)

- 도시화, 교통·통신의 발달은 지방색 약화, 고유문화 소실 위기로 연결되어, 지역문화의 기록·보존·활용 주체로서 지방문화원 여전히 중요

- \* 지역문화 문제점 : 격차(34.2%) > 획일화(27.7%) > 부조화(16.4%) (지역문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, 2019)

## □ 국가 · 지자체의 지방문화원 육성 · 지원 책무 강화

-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,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가 권한과 관리책임,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이 지자체로 지속 이관(2002년~)

- \* 인가권자(문체부장관 → 시도지사), 사업활동 지원(국가→지자체), 설립·운영 시설기준(시행령 → 조례)

-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·지자체의 지방문화원 활성화 의무 강조(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, 2020)

- \* 육성·지원시책 수립(국가/지자체) → 문체부장관/기본계획(5년), 시·도지사/시행계획(매년)

👉 지역의 **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보존**하고, **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** 교두보로서 **지방문화원**의 혁신을 지원할 필요

## II. 현황 분석

### 1 일반 현황

#### □ 지방문화원 개요

- 정의 :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- 설립 근거: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(시·도지사 인가 등)
- 주요 사업(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)
  - △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, △지역문화 국내외 교류, △지역문화행사 개최, △지역문화 컨설팅, △문화예술교육, △다문화 문화지원 등

#### < 참고 : 지방문화원 관련 사무 등 지방이양 주요 연혁 >

-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허가권자(‘문체부장관 → ‘시도지사,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, 02년)
- ‘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(05년) 및 ‘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(19년) 등 사업 및 예산 이양
- \* 지방문화원 관련 지원 → 보조금법 시행령(별표2)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제외사업
-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(시행령 → 시도 조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20년)

#### □ 설립현황 : 총 231개 (21.11월말 기준, \* 천안/창원/제주 복수설립)

시·도	개수	문화원 명	미설립
계	231		1
서울	25	종로, 중구, 용산, 성동, 광진, 동대문, 중랑, 성북, 강북, 도봉, 노원, 은평, 서대문, 마포, 양천, 강서, 구로, 금천, 영등포, 동작, 관악, 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	-
부산	16	서구, 동구, 중구, 영도, 부산진, 동래, 남구, 낙동, 해운대, 사하, 금정, 강서, 연제, 수영, 사상, 기장	-
대구	8	중구, 동구, 팔공, 서구, 남구, 북구, 수성, 달서, 달성	-
인천	10	중구, 화도진, 미추홀학산, 연수, 남동, 부평, 계양, 서구, 강화, 옹진	-
광주	5	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	-
대전	5	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, 대덕	-
울산	5	중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울주	-
세종	1	세종	-
경기	31	수원, 성남, 의정부, 안양, 부천, 광명, 평택, 동두천, 안산, 고양, 과천, 구리, 남양주, 오산, 시흥, 군포, 의왕, 하남, 용인, 파주, 이천, 안성, 김포, 화성, 광주, 양주, 포천, 여주, 연천, 가평, 양평	-
강원	18	춘천, 원주, 강릉, 동해, 태백, 속초, 삼척, 홍천, 횡성, 영월, 평창, 정선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, 양양	-
충북	11	충주, 청주, 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증평, 진천, 괴산, 음성, 단양	-
충남	15	천안(동남구, 서북구), 공주, 보령, 온양, 서산, 논산, 당진, 금산, 부여, 서천, 청양, 홍성, 예산, 태안	계룡시
전북	14	전주, 군산, 익산, 정읍, 남원, 김제, 완주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	-
전남	22	목포, 여수, 순천, 나주, 광양, 담양, 곡성, 구례, 고흥, 보성, 화순, 장흥, 강진, 해남, 영암, 무안, 함평, 영광, 장성, 완도, 진도, 신안	-
경북	23	포항, 경주, 김천, 안동, 구미, 영주, 영천, 상주, 문경, 경산, 군위, 의성, 청송, 영양, 영덕, 청도, 고령, 성주, 칠곡, 예천, 봉화, 울진, 울릉	-
경남	20	창원(창원, 마산, 진해), 진주, 통영, 사천, 김해, 밀양, 거제, 양산, 의령, 함안, 창녕, 고성, 남해, 하동, 산청, 함양, 거창, 합천	-
제주	2	제주(제주, 서귀포)	-

## 2

## 문제점

\* 출처 : 2020 지방문화원 실태조사

### ① 높은 보조금 의존도와 자체재원 부족

- (지역간 편차) 지방문화원 1개소당 평균 지출규모는 약 7.1억원 (2019년 결산기준)이며, 지역별 편차가 크게 존재

\* (최대) 강원권 / 평균 11억원, (최소) 대구광역시 / 평균 3억

- (지방비 의존) 보조금, 특히 지방비 비율(지방비 63.1%, 국고 12%\*)이 높으며, 자체 재원 비율(자체수입 12.4%\*\*, 후원금 2.3%)은 낮은 상황

\* 개별 문화원이 중앙부처의 지역관련 공모사업(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 등) 참여

\*\* 평균 정회원 수는 463명, 회비납부율은 66.3%, 연회비 평균 9만원

### ② 지역문화 매개기관간 경쟁심화

- (문화재단 확대)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인 지역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, 문화재단 중심의 사업설계 증가

구 분	시설수(개)	평균 직원수(명)	평균 예산액(천원)
기초지역문화재단	86	60.3	8,303,488
지방문화원	230	4.02	718,699

\*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, 광역을 제외한 기초지역문화재단과 비교

- (기관간 경쟁) 사업영역 및 공모사업을 둘러싼 경쟁 심화 우려 제기

####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토론회(19.8.29)

▶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각종 문화예술 단체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관계에 놓인 실정

▶ 지역 내에서 문화원과 지역문화재단 간의 역할이 중복되어 경쟁 혹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

### ③ 지방문화원의 혁신역량부족

- (중장기 전략부재) 다수의 문화원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,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

\* 3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(19.2%), 문화원 경영환경분석(39.6%)

- (인력 부족) 인건비를 받는 인력은 평균 3.8명으로,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이 3명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54.4%를 차지

- (자료관리체계 미흡) 보유한 향토자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사료전시관이나 별도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한 문화원은 소수에 불과
  - \* 향토사료전시관 15.2%,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자료 아카이빙 구축 39.1%

#### ④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지도·홍보 부족

- (인지도) 지방문화원에 대한 종합적인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 (38.7%)이며, 50대 이상 및 군 단위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상황
  - \* 연령별 인지도 : (최고) 50대 이상 / 55.7%, (최저) 16~19세 / 23.3%
  - \* 도시규모별 인지도 : (최고)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/56.7%, (최저) 시 단위 읍면지역 36.5%
- (홍보부족)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서 이용자의 비교적 높은 평균 이용 횟수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부족
  - \* 평균이용횟수 : 4.9회 (문예회관 2.9회), 만족도 : 5.83(주민센터 5.69) (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)

**(참고) 지방문화원 관련 현장의 목소리**  
-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토론회(19.7~9) -

#### □ 지역문화기관간 역할구분 필요

- ✓ 지역의 문화 관련 조직·기관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혼선과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
- ✓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추진주체는 '문화재단'과 '문화원'임. 이들 주체간의 협력과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함
- ✓ 지역문화재단 설립으로 지역 내에서 문화원 등 단체와 갈등, 생활문화와 예술영역의 갈등 발생(상대적 지원소외감, 박탈감)

#### □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필요

- ✓ 재단, 문화원 등 지역 공공문화기관 인력의 전문성이 높지 않고, 지역간 격차도 심한 편임
- ✓ 문화원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전문가 수준의 인력 확보 어려움
- ✓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 연구원들을 보강해 지속적인 투자 필요

#### □ 지역문화고유성 확보 지원 필요

- ✓ 지역문화발굴 창조, 지역가치 발굴 등은 지역 정체성 문제, 지역문화발굴 및 창조 관련 지역학 내용 보강 필요
- ✓ 문화격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소지역 단위의 문화진흥을 위한 정부노력이 필요, 예를 들어 지역학, 생활사 연구로 고유성을 발굴하는 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
- ✓ 지역의 중요한 문화관련 사료, 생활문화·향토문화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발굴·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함

### 3 전략 도출

#### □ 지방문화원 현황 진단

Strength (강점 요인)	Weakness (약점 요인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국적 네트워크 및 회원 보유</li> <li>•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법적 위상</li> <li>• 평균 40년에 이르는 지역민·지역문화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</li> <li>• 풍부한 원천콘텐츠 보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조금법에 의한 국고보조 곤란</li> <li>•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 심화 및 자율성 약화</li> <li>• 시설 노후화, 어르신 위주 이미지</li> <li>• 문화원 인적역량 부족</li> <li>• 보유자료 및 정보 활용 미비</li> </ul>
Opportunity (기회 요인)	Threats (위협 요인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구 감소 등 지역쇠퇴·소멸위기에 따른 지역고유 문화지원 수집 필요성 증대</li> <li>• 생활 SOC 투자 확대</li> <li>• 이야기산업 등 지역역사 문화 활용 콘텐츠 개발 수요 증가</li> <li>•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문화재정 축소 우려 및 문화원 재정 불안정 우려</li> <li>•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 증가로 인한 기능중복과 경쟁</li> </ul>

#### □ 정책 방향성 설정

	강점 (Strength)	약점 (Weakness)
기회 (Opportunity)	<p><b>SO전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 고유문화 보전 역할과 브랜드화를 통한 포지션 명확화</li> <li>• 지방문화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발굴</li> </ul>	<p><b>WO전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문화원을 지원하는 방향의 문화원연합회 기능 개선</li> <li>• 지방문화원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</li> </ul>
위협 (Threats)	<p><b>ST전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간 역량편차를 줄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역량 제고</li> <li>• 지역 내 타문화기관과 협력관계 확대</li> </ul>	<p><b>WT전략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문화원 관련 조례, 정관 등 현실화를 통한 지속기반 마련</li> <li>• 어르신 위주 이미지 활용, 실버문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</li> </ul>

#### □ 지방이양 사무임을 고려한 중앙-지방간 역할분담

문체부	+	지자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지역가치의 창조와 공유' 등 지방 문화원 발전방향 제시</li> <li>■ 관련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</li> <li>■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을 통한 간접지원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및 예산 시설 등 실제 지원방안 강구</li> <li>■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조례 제·개정 등</li> </ul>

### III. 비전 및 추진전략

<b>비전</b>	<b>‘지역다움’ 을 통한 문화강국으로 도약</b>
<b>목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❖ 지역가치 발굴·확산 중심으로 문화원 고유역할 강화</li> <li>❖ 체계적 지원 통한 문화원의 장기지속성 확보</li> <li>❖ 우수문화원의 적극적 발굴·지원 통한 성과 확산</li> </ul>

추진전략	핵심 추진과제
지역 가치의 창조와 공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기관화</li> <li>②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</li> <li>③ 소실 위기 지역 기억저장소 기능 강화</li> <li>④ 지역 문화·역사 교육 분야 역할 강화</li> </ul>
지속 가능 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⑤ 지방문화원의 자체 재원 마련 지원</li> <li>⑥ 시설 및 예산 지원 강화</li> <li>⑦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체계화</li> </ul>
혁신 역량 강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⑧ 문화원연합회의 지원기능 강화</li> <li>⑨ 시도연합회의 사업 및 정책소통 거점화</li> <li>⑩ 지역문화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강화</li> <li>⑪ 운영표준 마련 등 문화원 혁신역량강화</li> </ul>

- ◇ (문체부) 기본계획을 통한 방향 제시 및 우수 사례 확산
- ◇ (지자체) 시행계획을 통한 실제 사업 및 예산 지원



## IV. 중점 추진과제

### 1 지역가치의 창조와 공유

◇ (현황) 지역문화 소실우려 속, 지역 문화기관간 경쟁 심화

☞ (추진방향) 지방문화원이 축적해온 지역 고유문화 분야 역량을 바탕으로, 지역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중심역할 부여

#### 1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기관화

- 지역문화진흥법(제11조의2)에 근거, 특색있는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을 위한 사업(기록, 조사, 연구 등) 적극발굴 **국가·지자체**

✓ (예시)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 / 문화원연합회

- (목적) 지방문화원 소장자료의 자원화 및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지방문화원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 제고
- (현황)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(약 6만 건) → '지역N문화' 누리집(nculture.org) 통해 관련 콘텐츠 제공 중

- 한국문화원연합회\*를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(관련 고시 개정) **문체부**

\*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연합회

- 해당 지역 문화원에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사업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하고, 관련 사업 및 예산 우선배정 검토(지원조례 제·개정) **지자체**

#### 2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

-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연구소 설립 등 지리적·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동일 문화권 및 지역 특성을 연구하는 지역학 연구 지원 강화 **지자체**

✓ (예시) 춘천문화원 : 춘천학 연구소

- 강원도와 춘천의 역사와 문화 정립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목표로 2019년 춘천문화원 내 설립
- 춘천의 민속문화 아카이브 구축, 학술총서, 근현대 자료DB 구축 등 사업진행

- 시·도 문화원연합회 또는 권역별 대표 문화원 지정을 통해, 행정경계를 넘은 권역별 지역학 연구 및 관련 네트워크 형성 지원 **광역지자체**

\*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7조(관계 기관의 협조 등)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·육성할 수 있다.

### 3 소실 위기 지역 기억저장소(아카이빙) 기능 강화

- 도시재생에 따른 지역공간 변화, 사회적 중요 사건(코로나19 등)에 대한 경험 등 미래에 전해 줄 다양한 지역 삶의 모습 기록화 지원 **국가지자체**

✓ (예시) 성북문화원 : 성북마을 아카이브

-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와 협력하여 지역기반·공동체 디지털 아카이브인 ‘성북마을아카이브(archive.sb.go.kr)’를 구축
  - 재개발구역, 전통시장 등의 생활상을 ‘주제로 보는 성북’으로 수록

- 지방문화원과 연계, 마을기록관 등 지역기억자료실 마련 추진 **지자체**

✓ (예시) 미추홀구 마을박물관

- 2015년 미추홀구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,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콘텐츠로 활용, 주민들로 구성된 ‘마을큐레이터’가 자원활동가로 직접 전시기획·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조성

### 4 지역 문화·역사 교육 분야 역할 강화

- 초·중등 지역교과 및 자유학년제 등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서로 연결 되는 지역관련 교재 및 연계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원 **지자체 및 지방교육청**

✓ (사례) 이천문화원 : 체험교육프로그램

- ▶ 이천문화원은 이천시 및 이천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초등 3학년 교과과정인 ‘우리고장이천알기’ 및 중등과정 ‘자유학년제’ 등과 연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진행

- 지방문화원의 ‘문화학교’를 활용, 청소년 및 귀농·귀촌·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등 인문·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강화 **지자체**

\* 전국 230개 문화원 운영 문화프로그램 수 2,461개, 연간 이용자 873,540명(2020년)

## 2

## 문화원의 지속가능 기반구축 지원

◇ (현황) 재정분권의 가속화 속, 지방문화원의 재정 불안정성이 증가

\*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이후, 문화원의 안정적 예산확보 문제 지속

☞ (추진방향) 수익사업 등 자체 재원 발굴 지원 및 안정적인 문화사업을 위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강구

### 5 지방문화원의 자체 재원 마련 지원

○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사례발굴 및 확산 **문체부**

\* 지방문화원 : 법인세법(제29조)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해당 기관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)

√ (예시) 대전서구문화원

▶ 자율운영 프로그램 개발(강사가 직접 수강료·인원·내용을 정하고, 수강료의 80%를 강사료로 지원하고 20%를 문화원운영수입으로 귀속)을 통해 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확대

○ 지역기업 중심, 문화원과의 스폰서십(메세나) 체결 지원 **지자체**

\*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(재산의 출연 등)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○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을 위한 정관개정 등 적극지원 **지자체**

\*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요건 등 의무사항

-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
-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
-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

○ 지역특성화 매칭펀드사업\* 대상(지자체 출연·설립한 공공문화예술재단 및 기관)에 지방문화원 포함 **문체부**

\* 기업이 지자체가 출연·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의 공공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추가 매칭하는 사업(문화예술위원회, 한국메세나협회)

## ⑥ 지방문화원에 대한 시설·예산 지원 강화

- 노령화된 지방문화원\*을 중심으로, 시설 리모델링\*\* 등 지원 **지자체**
  - \* 지방문화원 소재 건물의 91%가 지자체 소유이며, 건립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가 약 21.3%
  - \*\* 노령층인 주 이용자 특성을 고려,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디자인 (Universal design) 도입 지원 등
- 생활밀착형 SOC 사업과 연계, 노후화된 지방문화원의 이전 지원 **지자체**

✓ (예시) 대전동구문화원

- ▶ 대전동구문화원은 2020년 동구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함께,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장소 이전



-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내 신규건립되는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 적극 검토 **지자체**

✓ (예시) 예산문화원 - 예산시네마 위탁운영

- ▶ 예산문화원은 2018년 예산군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신규로 건립한 작은영화관 <예산시네마>를 위탁운영하여 누적 관객 30만 달성 등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



## ⑦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체계화

-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방향을 고려하여 재정·인력·사업·시설 지원 등 근거규정을 포함한 표준조례안 마련 **문체부**

\* 기 제정되어 있는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조례(202건)에 대한 내용분석 등 추진

※ 표준조례안 주요내용(안)

- 지방문화원의 고유원형보존 전담기관 지정 근거
- 지역학 및 지역생활사 등 특성화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위임·위탁 근거
- 지방문화원 필수인력 인건비 및 시설임차비 등 예산지원사항의 명문화 등

-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을 종합반영한 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·개정 **지자체**

\* 지방문화원이 있으나, 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(24개) 제정 필요

### 3 문화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

- ◇ (현황) 지역 원로 중심 기관이라는 노후한 이미지, 타기관 대비 인적·물적 역량 부족 등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쇄신 필요
- ☞ (추진방향) 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경영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상향 평준화 유도, 혁신 역량 배양으로 신뢰도 제고 지원

#### 8 문화원 연합회의 지원기능 강화

- 문화원연합회 차원,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통해 시·도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역할강화(경영컨설팅 등) 지원 **문체부**
- 사업특성화(생활사, 향토사, 마을기록, 지방문화원 경영 등)를 고려한 지방문화원 구성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 지원 **문체부**
  - \* 지방문화원 아카데미 사업 : 5회, 130명 교육수료(2020년 기준)
-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\*을 통한 정기적인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시행 및 관련 문화원 데이터 구축 **문체부**
  - \*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간 문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 관련 통계 및 정보를 통합수집·관리하는 시스템(21년 구축)

#### 9 시·도 연합회의 광역단위 사업·정책 소통 거점화

- 시·도 문화원 연합회(한국문화원연합회 시·도 지부)의 역량강화 지원 및 통합·연계형 사업 거점화 지원 **광역지자체**
  - \* 시·도 문화원 연합회 지원근거를 담은 표준조례안 배포 및 시행완료(17개 시도)

✓ (사례)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량강화 교육

▶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교육을 경기도 31개 시·군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직원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진행

- 시·도 연합회장을 시·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\*(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)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문화원의 정책제안 기능 강화(관련 조례 개정) **광역지자체**
  - \* 시·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심의 등 광역지자체의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논의·협력 기구

## 10 지역문화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강화

- 지역문화기관\* 간 대화·협력 논의를 위한 **합동토론회** 등 정기적 교류의 장 구축 지원 **문체부, 지자체**

\* 지역문화진흥원, 지역문화재단(광역-기초),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유관기관 참여

- 지역주도 문화사업 계획 공모 시, 지방문화원 등 지역 문화기관 협력 네트워크 적극 활용 지원 **문체부, 지자체**

\* 공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역문화기관 거버넌스 활용을 평가요소화

- 광역-기초간 연계, 생활권(기초)단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지방문화원 적극 활용 **문체부, 지자체**

\*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 
6.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
-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노년세대 대상 문화사업의 기관거점으로 지방문화원 및 협력네트워크 활용 **문체부, 지자체**

✓ (사례) **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**

- ▶ (목적) 고령시대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체적인 어르신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역할 부여
- ▶ (사업내용) 어르신 문화활동,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등 175개 단체 지원

## 11 운영 표준 마련 등 문화원 혁신 역량 강화

- 지방문화원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**표준정관의 합리적 조정** 등 운영가이드라인 제시 **문체부**

\* 지방문화원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진 필요사항

- 지방문화원 원장 및 사무국장 등 내부인력의 문·야·예술분야 전문성 등 최소자격요건 강화
- 이사회 구성 시 지역문화 전문가, 연령, 성비 등에 대한 최소비율 확보
- 문화원 사업 기획력 제고를 등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

- ‘지방문화원의 날(10.10)’과 연계, **혁신역량 우수문화원을 선정·포상**하고 지역문화기관 대상 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 제공 **문체부**

## V. 향후 계획

□ 사회관계 장관회의 안건 상정 : 21.12.22

□ 시·도 시행계획(예산 및 자원 등 포함) 작성·제출 : 22년 2월

< 법적 근거: 지방문화원진흥법, 시행령 >

◆ 법 제3조의2 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④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◆ 시행령 제3조 (지방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

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정책의 기본방향
2.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자원에 관한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□ 시·도 시행계획 내용 분석·우수사례 공유 : 22년 하반기

○ 타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·사업 등을 23년 시행계획 마련 시 참고

## V. 추진 일정

세부 과제	추진 기관	추진 일정
<b>전략1 지역가치의 창조와 공유</b>		
<b>1-1.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기관화</b>		
1-1-1.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사업 발굴·추진	국가, 지자체	'21~
1-1-2. 고유원형 보존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	문체부	'22~
1-1-3. 지역문화고유원형 보존 지원관련 조례 제·개정	지자체	'22~
<b>1-2.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</b>		
1-2-1. 지역학 연구 지원 강화	지자체	'22~
1-2-2. 권역별 지역학 연구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	광역지자체	'22~
<b>1-3. 소실위기 지역 기억저장소 기능 강화</b>		
1-3-1. 지역공간 변화 등 지역 삶의 모습 기록화 지원	국가, 지자체	'21~
1-3-2. 마을기록관 등 지역기억자료실 마련	지자체	'22~
<b>1-4. 지역문화·역사교육 분야 역할 강화</b>		
1-4-1. 지역관련 교재 및 연계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원	지자체, 지방교육청	'21~
1-4-2. 청소년 및 귀농·귀촌·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	지자체	'22~
<b>전략2 지속가능 기반구축</b>		
<b>2-1. 지방문화원의 자체 재원 마련 지원</b>		
2-1-1. 수익사업 사례발굴 및 확산	문체부	'22~
2-1-2. 지역기업과 문화원의 메세나 체결 지원	지자체	'22~
2-1-3.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절차 등 적극지원	지자체	'22~
2-1-4. 지역특성화 매칭펀드사업 대상 포함	문체부	'22~



세부 과제	추진 기관	추진 일정
<b>2-2. 지방문화원 시설·예산 지원 강화</b>		
2-2-1. 노령화된 시설중심, 리모델링 지원	지자체	'22~
2-2-2. 노후화된 지방문화원 이전 지원	지자체	'22~
2-2-3. 신규건립 지역문화시설 위탁관리 검토	지자체	'22~
<b>2-3.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조례 체계화</b>		
2-1-1. 표준조례안 마련	문체부	'22~
2-2-2.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제·개정	지자체	'23~
<b>전략3 혁신역량 강화 지원</b>		
<b>3-1. 문화원 연합회 지원기능 강화</b>		
3-1-1. 문화원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지원	문체부	'22~
3-1-2. 문화원 구성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	문체부	'22~
3-1-3.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문화원실태조사 실시	문체부	'22~
<b>3-2. 시도 연합회 광역단위 소통 거점화</b>		
3-2-1. 시도 문화원 연합회 사업 거점화 지원	광역지자체	'22~
3-2-2.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	광역지자체	'22~
<b>3-3. 지역문화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강화</b>		
3-3-1. 지역문화기관 정기적 교류의 장 구축지원	문체부, 지자체	'22~
3-3-2. 지역 문화사업 공모시 지역 문화기관 협력 네트워크 활용	문체부, 지자체	'22~
3-3-3. 문화예술교육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	문체부, 지자체	'22~
3-3-4. 실버세대 대상 문화사업 기관거점 활용	문체부, 지자체	'22~
<b>3-4. 문화원의 혁신 역량 강화</b>		
3-4-1. 표준정관 등 문화원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	문체부	'22~
3-4-2. 혁신역량 우수 문화원 포상 및 지원	문체부	'22~